

[거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11. 21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5. 11. 21.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68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 인위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제정코자함.

나. 주요골자

- 재난종류 등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재난의 종류

- 자연재난 :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
- 인적재난 : 붕괴, 폭발, 화재 등의 재난
- 기반재난 : 국가,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

- 대책본부의 운영 기간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 4조)

- 대책본부의 운영기간

- 자연재난 ㄱ 여름철 : 매년 5. 15 ~ 10. 15
 ㄴ 겨울철 : 매년 12. 1 ~ 익년 3. 15
- 인적재난 :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부터 복구완료시까지
- 기반재난 : 매년 4. 1 ~ 9. 30(중점대응기간)

○ 대책본부의 구성

- 본부장 : 군수 - 차장 : 부군수
- 통제관 : 자연, 인적,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
- 담당 : 자연, 인적,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
- 실무반 :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,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

- 재난대비체제 단계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(안 제7조)
-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에 따른 실무반 편성 기준(안 제9조)
-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상황관리체제(안 제12조)
-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, 인력 및 장비동원,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내지 안 제17조)
- 기반재난의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 내지 안 제30조)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,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군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의 구성·운영과 각종 재난 발생시 상황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,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검토되었으며,
-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인적 재난은 물론 기반재난을 비롯한 테러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상황관리와 전문가의 양성 등 실질적인 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검토 되었음.
- 동 제정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6. 수정안 요지 : “해당없음”
7. 심사 결과 : “원안 가결”
8. 소수의견 요지 : “생략”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생략”